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,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결산서 등의 제출 (안 제1조 및 제2조)
-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 (안 제3조)
-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 (안 제4조 )

-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구청장의 의무 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,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-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